

서면답변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김영해 위원
답변자	평창군수 (스포츠사업단장)	답변일자	2006. 12. 13
회의	제13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

질문요지

-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.

답변내용

-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사본을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평창종합스포츠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과 업 지 시 서

2006. 8

평 창 군

목 차

I. 과업의 개요	1
II. 일반사항	2
III. 특기사항	4
IV. 부문별 과업지시서	5
1. 지형현황측량	5
2. 토질조사	8
3. 문화재 지표조사	14
4. 사전환경성 검토	15
5. 사전재해영향검토	19
6. 기본계획	23
7. 실시설계	27
V. 성과 품	36

I. 과업의 개요

1. 과업명 : 평창종합스포츠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평창군의 스포츠거점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지역성 반영, 다양한 스포츠 시설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3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간적 범위

- 1) 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64번지 일원
- 2) 면 적 : 46,232m²(13,985평)

※필지별 세부내역 : 별첨

3) 시설종류

- 조경시설 : 화단, 잔디원 등
- 운동시설 : 국민체육센터, 인조잔디구장, 족구장, 풋살경기장, 다목적구장 등

나. 내용적 범위

- 1) 지형현황측량
- 2) 토질조사
- 3) 문화재지표조사
- 4) 사전환경성 검토
- 5) 사전재해영향 검토
- 6) 기본계획(도입시설계획 및 인·허가 포함)
- 7) 실시설계

4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7개월 (210일간)

II. 일 반 사 항

1. 수급인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, 과업수행계획표, 현장대리인계,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와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고,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 본군 자문단 및 군의회에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와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.
3.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4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5.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6.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7.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8.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 기성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.

9. 보안사항

- 가.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현장대리인의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성과품은 수급인이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다.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.
- 라.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마.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.

10. 설계변경 조건

- 가.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시
- 나.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
- 다.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라.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11. 용역중지

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인·허가 지연에 다른 관계기관 협의지연, 각종 심의기간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2. 자료의 적용

- 가.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출처를 기재 하도록 한다
 - 1)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
 - 2) 통계연보
 - 3)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
- 나. 미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,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다. 본 과업준공 후라도 필요시는 승인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III. 특 기 사 항

1.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발주처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2.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실제상 업무관련실, 과·소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.
3.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4.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.
5. 사전환경성 검토,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일까지 수급업체는 발주처를 보좌하여 협의 등을 진행 또는 대리한다.
6.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.
7.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8. 용역비의 정산
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.

IV. 부문별 과업지시서

1. 지형현황측량

가. 일반지침

- 1) 본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- 2)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.
- 3)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
- 4) 지적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.
- 5)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%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.
- 6)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각도는 도·분·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.
 -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.
 -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 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 -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.
- 7)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종단거리 200m 마다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.

나. 세부지침

- 1) 삼각측량
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 지점(최소한 3점)을 기준하여 관측은 21초록 경위의 이상을 사용 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,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.
- 2) 도근측량
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심각측량에 준하여 측각은 3배각으로 한다.

3) 현황측량(평판측량)

축척은 1/1,200~1/1,3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, 특히 주요 시설물과 노거수(수목)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.

4) 등고선측량

1미터 등고선 현황도는 실측하되, 표고는 수준점 및 보조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.

5) 수준측량

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향후 확인이 용이한 1개 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6) 도면작성 및 계산

- 도면작성 :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· 제출해야 한다.
-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.
- 작성된 전산도면은 GIS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7) 보상물건 조사

- 용지도는 소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,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국유지 및 사유지의 편입 구역선을 색깔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.
-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 대상물건 및 지장물,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,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확인을,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과표, 가격 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물건조사는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,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물건조사의 농작물은 경작면적, 지장물은 경작자, 소유자별로 정확히 산출하되,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자 및 측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-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하고,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치되었을 때는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- 물건조사는 물건소재지, 종류, 수량, 상태, 소유자 등을 완벽하게 조사하여 기재하고,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, 지장물 배치도 및 건물 평면도,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- 토지대장, 지적도(연결도),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.
(토지, 지장률 조서상 일련번호대로 편철)
-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물건조서의 경작자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, 전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.
- 용지도에 각종 지장률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률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,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지, 미복구(미등기포함) 토지는 별도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
- 지장분묘에 대하여 소유자 및 합장여부를 용지도에 정확히 표기하고 묘주변 지장률을 소유자별로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률 조서에 표기하여야 한다.

2. 토질조사

가. 목 적

본 과업은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을 위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필요한 정밀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일반지침

- 1)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,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, 한국산업규격,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- 2) 수급인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감독원의 승인 하에 현장에 상주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4)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만일 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이동한 경우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5)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(3×5inch)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7) 본 조사설계 중 토층심도, 원위치시험 횟수, 실내시험 횟수 등은 추정 설계치임으로 조사결과 및 실내시험 횟수대로 정산한다.
- 8)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(표시말뚝, 인조점)를 취하여야 한다.
- 9) 이 용역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수급인이 진다.
- 10) 수급인은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,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다. 세부지침

- 1) 지표지질조사

-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, 지질구조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.

2) 시추조사

- 시추위치 및 심도조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되 각 공별 시추심도는 시추목적별로 지층구조 파악 및 공사 성토 재료원의 매장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시추조사는 B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수급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시추장비 일체를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시추조사 중 높은 코아 회수율을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, 채취된 시료는 각 열마다 1m 길이의 코아상자에 정돈한 후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및 심도를 표시해야 한다.
- 코아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Slim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,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.
- 시추조사는 연암층 1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시추완료 후 시추기의 이동은 감독원 지시하에 시행하여야 하며, 만일 수급인이 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거나 굴진심도의 확인이 없이 기계이동을 임의로 하였을 때는 그 시추공의 작업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감독원은 기계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시 또는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할 때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당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지형의 여건, 기타 부득이한 조사위치 및 조사공수, 굴진심도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현지에서 조사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수급인은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전 특히 인쇄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요약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만약 감독원이 성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제

반 법적 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.

- 감독원이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.
- 수급인은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하고 측량하여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, 측량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측량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.
- 시료의 포장 및 보관
 -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시험실에 운반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수급인은 시료보관 및 운반에 있어 충격방지, 기후조건에 의한 변질 및 동결방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.

3) 자연시료 채취

(시추조사시 사업부지내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에 적용)

-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, 시료의 채취, 운반,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자연시료 채취는 Piston Sampler를 사용하여 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, 실시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- 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심도에서 재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.
-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채취되어야 한다.
- 자연시료 채취시 Thin Wall Tube의 재질은 동, 규격은 직경 75mm, 두께 1mm, 길이 1mm의 관이어야 하며, 채취된 자연시료를 운반할 때는 Thin Wall Tube를 나무상자에 넣어 충격이 없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.
- 자연시료 채취 및 자연시료에 대한 실내시험 비용은 조사결과 및 실내시험 횟수대로 산출내역서상에 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한다.

4) 표준관입시험

-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의거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보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.
- 표준관입시험은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토층이라도 1.5m 간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다.

5) 시험굴조사

- 현장답사 및 시추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절토되는 구간의 대표적인 토층에 대하여 시

험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시험굴조사의 심도는 토사층 1~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,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, 다짐시험, 실내C.B.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kg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.
-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사층 1m 및 2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고,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도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현장밀도시험 및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
6) 토질시험

-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, 변경 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채취된 모든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,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분석·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시료의 보관, 분류, 운반 및 시험성과의 수집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시료의 하자로 소정의 실내시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감독원은 추가 시료채취를 명할 수 있고,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7) 실내시험

-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조사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,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시험항목	한국산업규격	비고
함수량시험	KS F 2306	
비중시험	KS F 2308	
액성한계시험	KS F 2303	
소성한계시험	KS F 2304	
입도시험	KS F 2302	
다짐시험	KS F 2312	
실내 C.B.R시험	KS F 2320	
직접전단시험	KS F 2343	
일축압축시험	KS F 2314	
삼축압축시험	KS F 2346	자연시료 채취시 실시
압밀시험	KS F 2316	

8) 보고서 작성

-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부지

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시추주상도에 사용하는 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.
-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.
-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.
 - 조사명
 - 조사시행자명
 - 제출문 : 수급인 대표 및 책임기술자 날인
 - 조사개요
 - 조사세부내용
 - 조사성과분석
 - 조사위치도
 - 지층단면도
 - 시추주상도
 - 시험성과표
 - 기타 자료
- 보고서 제작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수록한 본 보고서 및 주상도, 시험성과들을 수록한 부록편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.

9) 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불된다.

- 시추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기계기구 설치항목의 설치 횟수상의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시추기 및 표준관입시험, 자연시료 채취에 필요한 부속기구의 설치 및 이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실제 설치횟수에 의해 정산한다.
- 시추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지층별(점토, 모래, 자갈, 풍화암, 연암) 항목의 시추심도인 M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시추조사에 소요되는 재료비, 인건비 및 경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 시추조사 결과에 따른 지층별 시추심도에 의해 정산한다.
- 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코아상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코아상자 제작 항목의 개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코아상자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작 개수에 의해 정산한다.

- 시추기 설치 및 시추조사 비용은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, 자연시료채취 등 한지점에서 행해지는 지질조사의 성과가 감독원에 의해 인정된 지점에 대하여 지불된다.
- 자연시료 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에 누락(채취 및 실내시험)되어 있으나 자연시료 채취 시에는 자연시료 채취와 추가 실내시험 항목을 추가한다. 또한, 자연시료 채취의 실시횟수 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자연시료 채취 및 시료의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감독원이 인정한 시료에 한해 지불된다.
- 표준관입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표준관입시험 항목의 실시횟수 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표준관입시험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 시행횟수에 따라 정산한다.
- 토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토질시험 항목의 1식 단가로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시험(자연시료채취 시에는 이에 따른 실내시험 포함)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 시행횟수에 따라 정산한다.

3. 문화재 지표조사

가. 과업내용

- 1) 대상지 주변 환경조사
- 2) 주변지역의 역사 및 고고학적 문화재 조사
- 3) 지표조사 : 유존하는 고고, 역사, 민속 및 고건축, 보호수(당산나무, 정자나무)등 현지 조사
- 4) 성과품작성 : 지표상에 유존하는 문화재 조치의견 및 보고서 작성

나. 세부과업지시서

- 1) 일반지침
 - 지표조사시 나타난 유적에 대하여는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고 문화재관리부서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굴 및 발굴 등 보존 방향제시 및 문화재 피해의 극소화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지표조사는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표 및 발굴조사 등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 - 과업 범위 및 지침내용이 변경될 시 또는 발주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2) 과업수행방법
 - 계획구간내의 사적지, 역사적 유물, 기념물, 유형·무형 기타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의 분포현황 및 손실, 유·무 등을 조사, 분석하여야 한다.
 - 선사고고학적, 역사고고학적, 기타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조사결과를 정리·분석하여야 한다.
 - 대상지 현황조사로 나타난 문화재자원(역사·문화자원 등)의 분포현황도를 1/1,200 ~ 1/3,000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발굴조사 필요여부 결정 및 성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4. 사전환경성검토

가. 일반지침

- 1) 본 과업의 환경성 검토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 2001-29)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(환경부, 2000. 8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,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.
- 3)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나. 세부지침

1) 사업의 개요

- 과업의 배경 및 목적, 추진경위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술한다.

2) 지역개황

- 환경성 검토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검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.
- 토지이용상황, 환경관련 지구·지역의 지정현황,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, 특정야생 동·식물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, 환경피해 유발시설물, 보호시설물, 환경기초 시설 등

3) 검토 범위 및 분야의 설정

-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,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.

4) 환경현황의 조사, 예측, 분석, 저감방안

①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

-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

-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환경, 생활환경 및 사회·경제환경을 조사, 해석하여 지도,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,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.

② 조사항목

□ 자연환경

① 기상

-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 이상의 기상자료를 조사하여 분석, 통계적으로 정리한다. (기온, 강수량, 상대습도, 일조시간, 풍속, 천기일수 등)

② 지형·지질

- 사업지구의 토질 구성, 지질 안정성,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·분석한다.

③ 식물상

- 조사는 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며, 조사지역의 종별 분포상황, 녹지자연도, 현존량,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, 희귀종, 희소종,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.

④ 동물상

- 조사는 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며, 조사지역의 종별 분포상황을 기술한다.

□ 생활환경

① 토지이용

- 사업지구를 포함한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다.

② 대기질(오염원 및 오염물질)

- 실측 조사지점은 사업지구 주변 대기오염도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2개지점을 선정하여 1회 조사한다. 사업지구 주변의 오염원을 조사하고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며, 기본자료에 의한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 오염도를 파악한다.

③ 수질

- 사업지구 주변 계곡수 2지점에 대한 수질 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1회 실측 조사와 병행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, 수문현황, 수자원 이용상황, 공장, 사업장 등의 주요 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상황, 처리시설, 우수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.

④ 토양

-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2지점에 대해 1회 실측하고 토양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.

⑤ 폐기물

-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, 지정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이의 처리현황을 조사한다.

⑥ 소음·진동

- 환경소음 및 도로,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지점에 대해 1회 실측조사한다.

⑦ 위락·경관

- 위락시설 및 공원현황과 계획노선 및 주변의 경관을 문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한다.

▣ 사회경제환경

① 인구 및 주거

- 인구 현황 및 인구변화, 인구밀도, 주거형태, 주택보급율을 조사한다.

② 산업

- 산업구조, 산업별 활동사항 및 산업구조의 변화형태를 조사한다.

③ 교통

-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도로망과 교통량, 교통관련시설을 조사한다.

④ 문화재

- 문화재 분포현황을 조사한다.

라.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

- 환경에 미친 모든 영향예측 및 분석(직접·간접적 영향, 단기·장기적 영향, 긍·부정적 인 영향)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,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,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.
-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,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,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환경영향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분포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.

마. 종합평가 및 결론

-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술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

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.

바. 부록

- 환경성 검토서 작성에 사용한 인용문헌 목록, 동·식물상 조사자료 등 검토서와 관련한 제반 서류를 첨부 제시한다.

5. 사전재해영향검토

가. 일반지침

- 1) 본 과업지시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,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,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한다.
- 2)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.
- 3)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4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5)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.
- 6)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
나. 세부지침

- 1) 총괄
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위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, 평가 서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- 2) 세부사항
 - 평가서 작성
 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 - 공통 검토항목(행정 계획)
 -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
 -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 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
 -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
 -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
 -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
 -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하고, 재해위험지구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

-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등의 조사 여부
-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
 -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
 -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
 -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
-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
 -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,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
 -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
-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
 -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
 -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를 확인
-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 -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
 - 당해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
- 입지유형별 검토항목
 - 도시지역
 - 저지대에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의 계획을 지양
 -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
 - 저지대가 아닌 신규 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유도
 - 재해위험지구, 침수위험지역,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
 - 자연재해 유발요인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
 -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,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
 - 해안·도서지역
 - 상습해일 등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검토
 - 매립지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의 여부
 -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 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

침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, 유수지 설치 및 확대,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 계획,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검토

-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, 공원,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유도
 - 개발로 인한 해안선 침식, 백사장 파괴 등에 대한 검토 여부
 - 신규 건축물에는 옥상 또는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
 -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·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, 펌프장을 이용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방재 시설을 설치계획 수립 여부
 - 개발대상지역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수 범람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도록 유도
 - 연약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검토
- 산자지역
- 절·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
 -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
 -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,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
 -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
 -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, 절·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여부
- 농촌지역
-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 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
 -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
 -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 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여부
- 하천·호소지역
-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검토 여부
 -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
 -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

-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
-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여부
-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
-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
-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
 - 행정계획(P2)
 -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
 -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
 - 상위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 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
 -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
 -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
 -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
 -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,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 -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.

3)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

- 수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.

4) 과업의 종료

-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.

6. 기본계획

가. 일반지침

- 1) 본 과업은 평창군에서 수립중인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한다.
- 2)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,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한다.

나. 세부지침

1) 개발여건분석

-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·검토한다.
-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수립조성 시 반영한다.
- 상위계획·관련계획, 자연·인문환경 등을 현지조사, 문헌조사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.
- 스포츠타운 내 기존시설을 파악하여 반영여부와 장래 계획을 수립한다.
- 대상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·향토적 자원을 조사하여 반영한다.
- 스포츠타운 형태의 다양성, 행정체계의 이원성, 시설물의 종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합리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.
- 조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분야별로 최신자료를 조사·분석한다.
 - 자연환경 : 기후, 지형, 토양 및 지질, 식생, 경관, 수문 등
 - 인문환경 : 지역사회의 특성, 토지이용현황, 교통 및 동선, 관광 등
 - 관련 법규 및 계획
- 분석의 종합 : 개발여건분석 종합,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
2) 기본구상

- 개발 및 보전방향의 설정
 - 개발여건분석 결과에 따라 개발 및 보전 방향을 설정한다.
 - 최소 시설로 최대의 개발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한다.
- 이용자 추정
 - 이용권 설정 및 이용객 수요추정, 스포츠타운의 수용능력 등을 검토한다.
 - 이용자의 연령분포, 성비, 계층구조,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.

-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
 -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용자의 행태 등을 분석하여 도입활동 및 시설을 선정하고, 각 시설별로 규모·형태 등을 구상한다.
 - 각종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배치한다.
- 공간배치 구상
 - 토지이용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한다.
 - 관계법규 기준을 준수하고 자연현황에 최대한 순응하도록 구상한다.
 -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자연보전 및 관리방안을 지역별로 작성한다.
- 기본구상(안) 작성
 -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2개 이상 작성하고
 - 각 구상안에 대한 환경적·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하며
 - 군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령하여 선정하도록 한다.

3) 조성계획

- 토지이용계획
 - 스포츠타운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.
 - 스포츠타운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별 입지 및 규모를 산정한다.
 - 여건분석에 따른 공간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한다.
 -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집적하여 배치한다.
- 동선계획
 -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,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계획한다.
 - 신속성, 안전성, 쾌적성,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한다.
 - 동선체계는 차량과 보행을 적절히 구분하여 수립한다.
 - 기능별 동선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 체계별로 특징적 성격을 부여한다.
- 시설배치계획
 -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구에 적합한 세부시설을 선정한다.
 - 이용자를 고려한 유치시설 선정, 이용과 경관미,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, 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.

- 시설이 집중배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역(지구)별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.
- 각 시설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한다.
- 시설물계획
 - 시설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한다.
 -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도입한다.
- 조경계획
 - 시설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경체계를 구상한다.
 - 공간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물을 이용하여 공간감의 변화와 질서를 추구한다.
 - 조경시설은 우선적으로 자연재료를 사용한다.
 - 조경구조물의 형태와 색채, 질감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을 재고한다.
 - 본 대상지 주변 식생현황 및 천이상태를 조사하여 기존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한다.
 -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,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.
 - 나대지, 시설인접지의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
 - 자연식생구조인 상층·중층·하층의 구조를 유키도록 하고, 녹피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.
- 건축계획
 - 대상지의 지형,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한다.
 - 국내/외 우수한 공원내 건축물(관리사무실, 화장실 등)을 조사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한다.
- 단지조성계획
 - 자연경관의 변형을 억제하고 가능한 현지형을 이용한다.
 - 단지조성은 유치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지방법을 결정한다.
 - 시공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것이나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.
- 공급처리시설(상·하수, 전기·통신)계획
 - 상수도계획, 하수도 및 배수계획, 전기·통신계획, 기계설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경계적으로 계획한다.

4) 사업계획

◦ 사업추진계획

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적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며, 지구별·시설별·투자주체별

적정 투자계획을 수립

- 총사업비, 연차별 소요예산, 투자주체별 소요예산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투자계획을 수립
- 관리운영계획
 - 스포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
 - 스포츠타운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인력 및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.
 - 스포츠타운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.
 - 스포츠타운의 잠식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존계획, 풍치를 개선할 수 있는 풍치경관계획을 작성한다.

7. 실시설계

가. 과업범위

- 위치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64번지 일원
- 면적 : 46,232㎡(13,985평)

나. 일반지침

- 1) 공사비 산정은 건교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.
- 2)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, 골재원,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.
- 3)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정경제원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산정한다.
- 4)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.
- 5)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,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관련부문에 있어서는 자연생태·경관생태적인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6) 제반 성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,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.
- 7) 구조계산,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(예산내역서,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)는 전산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- 8)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, 보완하여야 한다.

다. 부문별 실시설계지침

1) 토목부문 실시설계

- 부지조성
 - 일반사항
 -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 결정으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서 임연 수립대의

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다.

- 주요지점, 외곽부,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,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.
- 각 블록 및 단지외곽, 도로 시·종점 및 교차점,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.
- 비탈면은 토지이용도,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.
-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·성토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- 부지내 마운딩 설치를 위한 토량은 양분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산토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처 협의를 거쳐 토취장을 결정하도록 한다.
- 설계기준
 -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.
 -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별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.
 -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기계화 시공시 시공성이 불량할 경우 Trafficability 확보를 위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연약지반의 설계
 -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 사항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.
 - 지반활동에 대한 안정을 결정
 - 한계성토고의 결정
 - 총 침하량의 산정
 -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
 - 연약지반의 장기침하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방안(단계별 건설 등)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총 공사기간의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2) 상수도설계

◦ 일반사항

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건교부 제정 상수도 설계기준 및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의거 설계한다.

◦ 관로설계

- 관망은 일부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또한,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한다.
-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연역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· 결정한다.
- 관보호공, 이형관 보호공,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· 결정한다.
-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· 결정한다.

3) 배수설계

◦ 일반사항

- 하수배제 방식은 자연퇴적 원리, 태양열과 물을 이용한 방식, 식생을 이용한 방식 등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자연형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하되 부분적으로 암거에 의한 분류식으로 하고, 우 · 오수관의 오접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건교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, 도시 상 · 하수도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.
-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동물의 이동통로가 형성 가능하도록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.

◦ 관로설계

-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우리군과 협의 · 결정한다.
-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한다.
- 본 지구와 연결된 하천(당해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)에 대하여는 해당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.

-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지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,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로 하며, 시설 밀집지역 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뚜껑을 사용한다.
-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, 합류점, 경사변환점, 수평방향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, 직선구간에서는 “하수도시설기준”에 의한다.
- 기타 빗물받이, 측구, 연결하수관 등의 설치기준 및 세부구조는 건교부제정 “하수도시설기준”에 의한다.
- 우수의 배수체계는 자연형 배수체계로 하여 물의 이동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
- 또한 우수배제 시 소댐을 건설하여 생태주거지나 실험시설지역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물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오수 배수체계는 자연퇴적 원리, 태양열과 물을 이용한 방식, 식생을 이용한 방식 등 자연형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.

4) 도로, 구조물 및 포장

◦ 일반사항

-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, 특히 포장구조에 대하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한다.
-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.
-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등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 조에 의한 심신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◦ 도로구조 및 각종 두께 결정

- 구조설계

- 포장설계는 토질, 기후, 골재 및 교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.
- 포장설계 시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,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

여야 한다.

- 각종 두께 설계
 - 포장두께 설계시에는 AASHTO법 및 TA법 등의 설계방법을 비교·검토하고 동결깊이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.
 -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(J.C.P)와 연속 철근콘크리트 (CRCP)등 2개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.
 -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.
 - AASHTO 도로포장 구조설계법 적용 시 이들 설계인자중 8.2ton 등 가단축환산계수(ESALF : Equivalent Single Axle Load Factor)에 대한 정량적 체계정립을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연구를 하여 계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도로구조물 및 배수, 부대시설설계
 -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
 -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(배수시설물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, 지하배수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, 암거,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포함)
 - 횡단구조시설은 건교부 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, 그러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부대시설 구조물 설계
 -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옹벽, 석축, 비탈면 보호공 등의 부대시설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부대시설 설계
 - 가드휀스, 방호책 등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고 특히 방음벽구간은 소음도를 예측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,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각종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안전 시설 설치편람 및 도로표지판 설치구역에 의거 설계해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K.S.F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구조설계
 -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 여부 및 문화성을 고려한 설계한다.
 - 구조물의 설계는 시공준 및 설계 수명기간 중에 작용하는 하중을 검토해야만 하는 극한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설계하중은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공합하여 정한다.
 - 설계강도는 부재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하여 얻는다.

- 환경친화적 단지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자연과의 공간적 접근성이 최대화 되도록 설계한다.
- 시공 시 경제성과 공기절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,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한다.
- 설치되는 구조물은 주변과의 조화 및 생물서식처 보전을 위한 고려와 미적인 측면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- 토압의 계산은 토질역학 원리에 의거하여 정해진 공인된 방법을 따르되 필요한 계수는 측정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.
- 구조계산 시 전산을 사용할 경우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업무처리 흐름도
 - 입력자료(디스켓 포함)
 - 출력자료(디스켓 포함)

5) 조경 및 환경부문

◦ 생태환경설계

-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연못 및 저면 설계 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한 호안 조성을 통하여 미생물 및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생태환경설계 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, 수분, 양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한다.
- 생태환경설계 시 지역여건 및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·식물의 서식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고,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생태계 특성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·식물은 보존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되어져야 한다.
-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,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에 있어서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하여야 한다.
- 식재위치는 생태환경, 조경시설·구조물과의 관계,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,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·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한다.
- 특히 곤충, 조류, 동물 관찰을 위한 시설들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생물의 생태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형태로 설치한다.
- 생태관찰로 및 등산로 조성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, 특히 생태계 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.
- 기존 수림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하여야 한다.

- 시설물 설계

- 현재 및 과거의 문화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특히, 자연생태와 조화를 고려한 문화적 시설물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.
-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.
- 이용자, 관리운영,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- 신체장애자/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한다.

- 포장설계

-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, 이용자의 편리, 향후 유지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
- 보도의 단절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,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.
- 진입로, 보행로, 관찰로 등의 포장 설계 시 불가피한 지역 이외에는 자연적 소재로 설계하여 소생물들의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이용과 보전적 측면이 고려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
6) 건축부문 실시설계

- 건축물 기본설계 대상

-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건축물의 제반설계는 공원의 조성 취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자연에너지(태양열, 우수, 미기후 등)의 이용이 가능한 계획으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건축물의 설계대상시설은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규모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계하며,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종합분석·검토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구조물 등이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
- 제반건물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전원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, 연구, 교육, 생태, 문화 등의 성격에 따라 변모할 이용자의 성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현대식 설비기기 사용 및 충분한 용량과 서비스시설 향상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.
- 건축물 상호간기능과 시설활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처리로 이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

를 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- 건립 예정지역에 대한 자연적·지리적 여건 등 주변환경과 부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
 - 분석하여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.
- 건물은 보수·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한다.
- 건축의 구조는 영구적이라야 하며, 사용자재는 내구성과 외력을 감안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마감재료는 연구시설별 기능을 감안하여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려하게 설계하되, 가능한 한국공업표준규격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건축물의 재료는 환경적 측면, 내구성, 시공난이도, 외관, 경제성,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되,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7) 전기·통신부문

- 조명설계 시에는 형광계통의 광원 사용을 억제하여 생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.
- 설계의 범위는 옥외전기 및 통신시설에 한하며,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.
- 전력간선시설 및 조명,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.
- 대상지내 전력공급계획 및 방송·통신시설은 안전성, 기능성,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,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방송설비는 음향 및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로 적재·적소에 배치한다.

8)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지침

◦ 설계도서 작성

- 시방서의 작성

부지 조성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전공사의 품질,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, 일반시방서, 특기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.

- 설계도면의 작성

- 모든 설계도서는 가급적 컴퓨터 작업에 의한 성과로 작성하도록 하며 설계도면의 규격, 양식 등의 작성은 감독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.
-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.
- 종단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한다.
-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시 및 치수표시는 미터법에 의해 작성한다.
-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개별 작성한다.

- 설계 준공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, 에스컬레이션 등의 부수적 업무에 편리하도록 도서를 작성한다.

- 사용자재조서

사용자재중 철근, 시멘트, 상하수도용 자재등 주요자재는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설계한다.

- 공사 공정계획

공정계획은 단계별, 공종별로 PERT 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

공종별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

- 단가 정의

물공량 명세에 따른 순서에 의거 공종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가정의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내역서 작성

- 수량 및 단가산출

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.

- 적용품셈 및 요율

- 건교부제정 표준품셈(실시설계가 진행되는 시점의 발행년도)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.
- 노임은 당해년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 작성하되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자재의 가격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일반 시중률가지 또는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한다.
- 원가계산은 재경원 예산회계 예규에 따른다.
- 산재보험 요율은 노동부제정 보험 요율을 따르며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 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.

V. 성과 품

품 명		수 량	규 격	비 고
현황 측량	측 량 원 도	각 1부		
	관 측 야 장	각 1부		
	계 산 부	각 1부		
토질 조사	토 질 조 사 보 고 서	10부	A4	
	자 료 집	1식	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문화 재 지 표 조사	문화 재 자 표 조 사 보 고 서	20부	A4	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사전환경성 검 토	사 전 환 경 성 검 토 보 고 서	20부	A4	-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사전 재 해 영 향 검 토	사 전 재 해 영 향 검 토 보 고 서	20부	A4	-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토지 적 성 평 가	토 지 적 성 평 가 보 고 서	20부	A4	-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교통 성 토	교 통 성 검 토 보 고 서	20부	A4	-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경관 관 토	경 관 검 토 보 고 서	20부	A4	-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조성 계획	조 성 계 획 보 고 서	30부	A4	100 ~ 150쪽 내외
	조 감 도	1부	A1	
	자 료 집	1식	-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
	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	소요분	-	-
실시 설계	설 계 보 고 서	30부	A4	조성계획보고서와 합본가능
	공 사 시 방 서	5부	A4	-
	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	5부	A4	-
	설 계 예 산 내 역 서	5부	A4	-
	단 가 산 출 서	5부	A4	시험성과표, 견적서(원본첨부)
	일 위 대 가 표	5부	A4	-
	수량산출서(토적계산서포함)	5부	A4	-
	실 시 설 계 도	5부	A1	원도 별도제출
	실 시 설 계 도 축 소 도 면	5부	A3	-
	전 산 파 일	1식		전체용역 성과 수록
	기 술 심 의 자 료	소요분	A4	실시설계단계에서 기술심의서
	각 종 인 · 허 가 자 료	소요분	A4	-
	자 료 집	1식	A4	각종 도·서, 조사자료, 사진첩 등